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호감호소 명칭 삭제〉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29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2. 5.
3. 회 부 일: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 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4조 및 제8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통보나 신병인도 의무를 가지는 기관 중에서 “보호감호소”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4조 및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84조(통보의무) ① (생략)	제84조(통보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u>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u>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치료감호시설</u>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생략)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② <u>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u>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	② <u>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치료감호시설</u> ----- ----- ----- ----- -----

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석방·	-----
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	-----
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	-----
여야 한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의 석방, 출소 등이 결정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¹⁾하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해당 외국인을 인도²⁾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1)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된 경우
2.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가 결정된 경우
3.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이 결정된 경우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 15. (생략)

② (생략)

2) 「출입국관리법」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이는 교정시설,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석방·출소 또는 퇴원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거나 해당 외국인을 인도하게 하여 신속히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 중 보호감호소는 1980년 12월에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여 감호·교화하는 시설로, 보호감호는 사회의 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부과하는 보호처분 중의 하나임.³⁾

그러나, 보호감호 처분이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 및 과잉처벌금지 원칙 위반 등 위헌성 소지가 있다는 지속적 문제 제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에 따른 폐지 의견을 제시한 이후⁴⁾⁵⁾ 2005년 8

3) 舊 「사회보호법」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保護對象者”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過失로 인하여 罪를 犯한 者는 제외한다)
2.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

제3조(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감호
2. 치료감호
3. 보호관찰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제7조 (보호감호의 내용) ①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被保護監護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다만,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를 있는 때에 한한다.

4)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실태연구」,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2003.12.), 185p 이하

5)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04.01.13.)

월 「사회보호법」은 폐지된 바 있음.⁶⁾

개정안은 근거가 폐지된 “보호감호소” 표현이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보호감호소 관련 내용 정비를 통한 법적용의 혼란방지 측면에서 볼 때 개정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당시의 부칙에는 이미 선고된 보호감호 판결 및 집행과, 재판계속 중인 보호감호청구사건 등에 대해 다양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데, 특히 부칙 제4조(보호감호시설의 수용에 관한 경과조치)는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대기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교도소”를 “보호감호시설”로 간주하도록 용어를 변경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보호감호 수용인원은 집행 중인 인원 4명과 대기인원 16명 등 총 20명이 수용되어 있음.

【 보호감호시설의 수용에 관한 경과조치 및 현황 】

舊 「사회보호법」 부칙(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 (보호감호시설의 수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 및 “교도소의 장”은 “보호감호시설” 및 “보호감호시설의 장”으로 본다.

• 보호감호수용 현황(2025. 4. 8. 법무부 제공) : 집행 인원 4명, 대기 인원 16명(천안 교도소)

아울러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다른 입법례에서 “보호감호소” 표현을

6) 舊 「사회보호법」은 1980년 12월 18일 법률 제3286호로 제정된 이후,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56호 시행으로 폐지되었음.

삭제하기보다는 “보호감호시설”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개정안의 경우에도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기보다는 “보호감호시설”로 조문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호감호시설” 명칭 사용 입법례 】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u>보호감호시설</u>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 7. (생략)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 ② (생략)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u>보호감호시설</u>의 장 또는 교도소의 장은 가종료자등이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기 5일 전까지 가종료자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에 수용시설의 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u>보호감호시설</u>의 장은 약물의 제공,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9조(방 배정) ① ~ ③ (생략) ④ 청장등은 형기 만료, 형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도소·구치소·<u>보호감호시설</u>(<u>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후단에 따라 보호감호시설로 보는 교도소를 말한다</u>)·국립법무병원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의 독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057